

2022년도 제1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공고

2022년도 제1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12월 28일

보건복지부장관 권 덕 철

< 2022년도 보건의료R&D 추진방향 >

- ◇ **바이오헬스 분야 정부 R&D 투자를 '25년까지 4조원 이상으로 확대 추진**
- 기초연구·응용연구를 균형 있게 확대(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, '19.5월)

2022년도 전략목표

**국민 건강 중심의 투자 강화로 더욱 건강한 대한민국
개방형 혁신을 통한 산·학·연·병 협력 강화**

**4대 전략별
중점 추진방향**

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	① 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한 연구 기반 조성
바이오헬스 첨단 유망기술 육성	② 재생의료 R&D 전주기 지원 확대 ③ 신약·의료기기·DNA 등 차세대 유망기술 지속 투자
국민 건강 중심 R&D 투자 강화 <small>* 제2차 기본계획 '공약적 R&D'</small>	④ 의료 사각지대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&D 확대 ⑤ 만성질환·정신건강 등 고비용·난치성 질환 극복 중점 투자
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	⑥ 산·학·연·병 연구협력 생태계 조성

I. 통합공고 개요

※ 상세 지원내용은 공고된 제안요청서(RFP)를 확인하시고 선정예정 과제수는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.

RFP 번호	세부 사업명	공고단위 (RFP명)		지원규모	지원기간	지원 대상	과제구성 요건* (아래 참고)	선정예정 과제수 (이내)	
1-1	전자약 기술개발	총괄과제 운영		800백만원 이내/년 (1차년도 600백만원)	5년 6개월 이내 (3+2) * 1차년도 9개월	비영리기관	①, ②, ④	1	
1-2		제품 개발 지원	치매	400백만원 이내/년 (1차년도 300백만원)	5년 이내 (3+2) * 1차년도 9개월	산·학·연·병	①, ②, ④	1	
			만성·희귀·난치질환					3	
1-3			임상 시험 지원	탐색 임상	400백만원 이내/년 (1차년도 300백만원)	3년 이내 * 1차년도 9개월	기업	①, ②, ④	3
				확증 임상					3
1-4		실증 지원		500백만원 이내/년 (1차년도 375백만원)	3년 이내 * 1차년도 9개월	산·학·연·병	②, ④	1	
2-1	혁신형 의료기기기업 기술상용화 지원	국제협력연구		500백만원 이내/년 (1차년도 375백만원)	3년 이내 * 1차년도 9개월	기업	①, ②, ④	8	
		해외임상시험		600백만원 이내/년 (1차년도 450백만원)	3년 이내 * 1차년도 9개월	혁신형 의료기기 기업	①, ②, ④	4	
3-1	실사용데이터 (RWD) 기반의 임상연구 지원	실사용데이터 기반의 임상 근거창출 지원		296백만원 이내/년 (1차년도 222.2백만원)	3년 이내 * 1차년도 9개월	산·학·연·병	②, ④	9	
3-2	보건의료 빅데이터 큐레이션 기술개발	빅데이터 스마트 큐레이션 기술개발		1,796백만원 이내/년 (1차년도 1,347.5백만원)	5년 이내 (3+2) * 1차년도 9개월	산·학·연·병	③	2	
4-1	K-Medi 융합인재 양성지원	신진의사 과학자 양성지원	디딤돌	100백만원 이내/년 (1차년도 75백만원)	1년 9개월 이내 * 1차년도 9개월	산·학·연·병	①, ④ ※위탁과제 불가	16	
			심화	200백만원 이내/년 (1차년도 100백만원)	1년 6개월 이내 * 1차년도 6개월	산·학·연·병	①, ④ ※위탁과제 불가	12	
4-2	보건의료 인재양성지원	한-스위스 국제협력		20백만원 이내/년	12개월 이내	산·학·연·병	①, ④ ※위탁과제 불가	10	
4-3		한-스위스 라이프사이언스 교류협력 지원		100백만원 이내/년	12개월 이내	산·학·연·병 및 공공기관	①, ④ ※위탁과제 불가	1	
4-4	보건의료 인재양성 지원사업	기초의학 Joint-R&D 예비연구		200~300백만원 이내/년 (1차년도 150~225백만원)	2년 이내 * 1차년도 9개월	학 ※의대 외주를 포함하는대학	②, ④	12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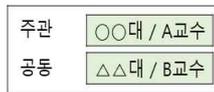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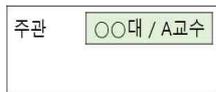
RFP 번호	세부 사업명	공고단위 (RFP명)	지원규모	지원기간	지원대상	과제구성 요건* (아래 참고)	선정예정 과제수 (이내)
5-1	정신건강연구 개발사업	정신건강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	400백만원 이내/년 (1차년도 300백만원)	6년 이내(3+3) * 1차년도 9개월	산·학·연·병	②, ④	6
5-2		비대면 심리지원 및 증재기술개발	190~450백만원 이내/년 (1차년도 142.5~337.5백만원)	6년 이내(3+3) * 1차년도 9개월 ※ 일부 분야는 3년 이내	산·학·연·병	②, ④	6
6-1	감염병 예방·치료 기술개발사업	의료현장 맞춤형 진단기반기술	500~1,500백만원 이내/년 (1차년도 375~1,125백만원)	2~3년 이내 * 1차년도 9개월	산·학·연·병	①, ②, ④	10
6-2		미해결 치료제 도전 기술개발	500~1,000백만원 이내/년 (1차년도 375~750백만원)	2~3년 이내 * 1차년도 9개월	산·학·연·병	①, ②, ④	18
6-3	감염병 의료안전 강화 기술개발	의료현장 공간 구조의 감염 제어, 치료기반 강화	800~2,000백만원 이내/년 (1차년도 800~1,000백만원) ※ 연도별 연구개발비 RFP 참고	3년 이내 * 1차년도 9개월	산·학·연·병	①, ②, ④	4
6-4		감염 환자 대응 시스템 최적화 기술개발	500~1,200백만원 이내/년 (1차년도 400~800백만원)	3년 이내 * 1차년도 9개월	산·학·연·병	①, ②, ④	4
6-5		감염병 대응 및 보호 장비 고도화	400~800백만원 이내/년 (1차년도 300~650백만원)	3년 이내 * 1차년도 9개월	산·학·연·병	①, ②, ④	6
6-6		의료 종사자 대응력 확보	900~1,000백만원 이내/년 (1차년도 700~800백만원)	3년 이내 * 1차년도 9개월	산·학·연·병	①, ②, ④	2
7-1	질병중심 중개연구사업	의료수요 연계형 중개연구	300백만원 이내/년 (1차년도 225백만원)	2년 이내 * 1차년도 9개월	산·학·연·병	①, ②, ④	10

*** 과제구성 요건은 RFP별로 확인 후 연구내용 등을 감안하여 구성**

- ① (주관) 주관연구개발기관만 참여하는 형태
- ② (주관+공동)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형태
- ③ (주관+공동, 주관+공동) 복수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참여하는 형태
- ④ (복수 주관 불가) 2개 이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구성된 과제는 참여 불가

① 주관 ② 주관+공동 ③ 주관+공동, 주관+공동 ④ 복수 주관 불가

과제 구성
요건
(예시)



※ 지원분야·세부분야별 최종 선정과제 수와 지원기간 등은 신청 과제의 우수성, 접수 경쟁률, 연간 연구개발비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연차별 연구개발기간과 연구개발비는 변경될 수 있음

II. 신청요건

□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

- 국·공립 연구기관
-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
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-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
- 「민법」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
- 「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·단체(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)

□ 신청 제한

-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
 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32조(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)에 따라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
-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저촉되는 연구자
 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64조(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)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5개로,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3개임

<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(3책5공) 연구책임자/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>

구분	연구책임자	책임자 외 연구자
주관연구개발과제(기관)	연구책임자	참여연구자
공동연구개발과제(기관)	참여연구자	

- 다음의 경우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에서 제외함

- ① 제안요청서(RFP)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
- ②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인 경우
- ③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

·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참여제한 중 이거나 연구책임자가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, 선정과제가 탈락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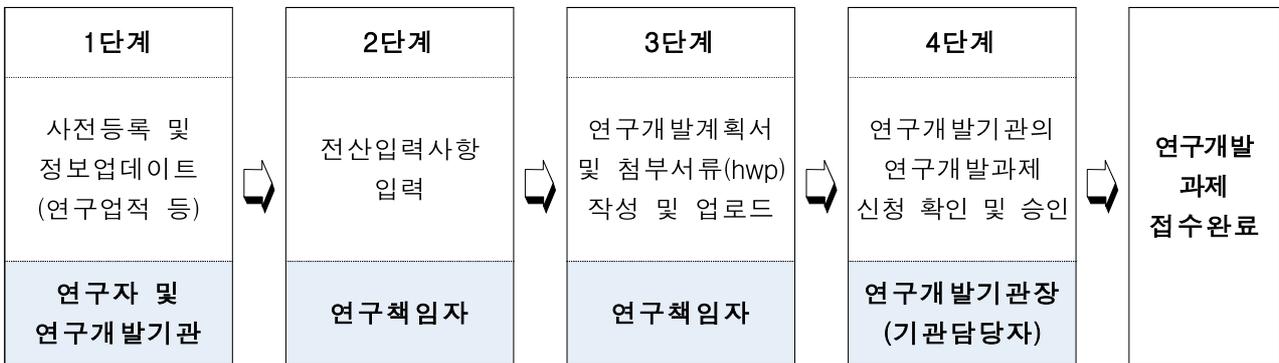
Ⅲ. 신청 방법

□ 신청방법

-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(www.htdream.kr)에 접속 후 화면 우측 상단 메뉴에서 ‘R&D지원시스템 바로가기’ 클릭

※ 연구개발과제 신청은 연구책임자 계정으로 로그인 후 ‘연구자 권한’으로 신청 가능

□ 신청절차



※ 자세한 내용은 공모안내서 참조

□ 서류제출기한

- ※ 공고단위(RFP)별 신청마감시간(18:00) 엄수 (마감 시간이후 연장 불가)
 - * RFP에 따라 신청마감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신청마감일을 확인 필요
- ※ 사업별 발표평가 일정 및 경쟁률 등 기타 평가관련 사항은 ‘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 시스템(www.htdream.kr)’에 공지 예정(2022년 2월초)
- ※ 일정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공고단위 (RFP)	연구책임자 과제신청 마감일시 (전산입력)	주관연구개발기관 인증 마감일시 (전자 또는 공문제출)
1차년도 9개월 지원 및 단년 지원 예정 RFP ※ RFP 4-1(신진 의사과학자 양성 지원) 중 심화 분야를 제외한 전체	2022. 1. 26(수) 18 : 00	2022. 1. 27.(목) 18 : 00
1차년도 6개월 지원 예정 RFP ※ RFP 4-1(신진 의사과학자 양성 지원) 중 심화 분야만 해당	2022. 3. 28.(월) 18 : 00	2022. 3. 29.(화) 18 : 00

IV. 관련 법령 및 규정

-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및 「보건의료기술진흥법」 등의 법령과 하위규정을 적용(상세내용은 www.htdream.kr → 자료실→ 관련법규/매뉴얼에서 확인 가능)

※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·개정에 따라 세부사항은 변경 될 수 있음

V. 기 타

□ 연구개발비 산정기준

- 신청과제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규모를 고려하고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(2022.1.1. 개정 예정)에 따라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적정 연구개발비를 산정해야 함
- 기관유형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

연구개발기관 유형	연구개발비 비율		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
	정부지원연구개발비	기관부담연구개발비	
비영리기관	100% 이하	-	-
중소기업	75% 이하	25% 이상	10% 이상
중견기업	70% 이하	30% 이상	13% 이상
공기업·대기업	50% 이하	50% 이상	15% 이상
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 사용용도 (비영리·영리기관 공통 적용)	가.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나. 연구시설·장비비 다. 기술도입비·연구재료비		
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비율	$= \frac{\text{기관부담연구개발비}}{(\text{해당 연구개발기관})\text{정부지원연구개발비}+\text{기관부담연구개발비}} \times 100$		

※ 제안요청서(RFP)에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, 해당 RFP 기준 적용

□ 연구시설·장비 도입시 유의사항

- 연구시설·장비(3천만원 이상)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는,
 -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‘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’ 를 작성·첨부하여야 함
 -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시설·장비가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는 과제평가단에서 심의, 1억원 이상인 경우는 국가연구시설·장비심의 위원회(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)에서 심의

□ 생명윤리법에 따른 IRB 심의

-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 하는 연구자는 해당 연도 협약체결 이전까지 기관생명 윤리위원회(IRB)의 심의를 받아야 함

□ 연구 성과물의 등록 및 기탁

- 연구성과물이 발생할 때에는 ‘연구성과 관리·유통 전담기관’의 담당 부서와 사전확인 후, 자원활용이 가능한 성과물을 등록·기탁하여야 함

□ 기술료 제도 안내

-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보고사항
 -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,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함
 -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

※ 자세한 내용은 통합공고 안내서 참조

VI. 문의처

○ 사업공고 열람

- 보건복지부(www.mohw.go.kr)

-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(www.htdream.kr)

☞ 문의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(www.htdream.kr) 질의응답(Q&A)으로 **질의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능한 신속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○ 공고단위(RFP)별 담당자 안내

-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(www.htdream.kr)에 별도 공지 예정
(2022년 1월 초)